

인문융합연구센터 규정

시행 : 2019.04.01.

제1조(명칭) 본 센터는 경희대학교 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연구처 부설 ‘인문융합연구센터’ (Center for Converging Humanities, 이하 “본 센터”라 한다)라 한다.

제2조(설립목적) 본 센터는 다양한 학문 분야 간의 학제적이고 융합적인 공동연구를 통해 현대사회에 걸맞은 새로운 연구 분야 및 주제의 창출, 확산에 목적을 둔다.

제3조(소재지) 본 센터는 본교 서울캠퍼스 내에 둔다.

제4조(사업) 본 센터는 제2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연구 및 교육 사업을 수행한다.

1. 학술회의 개최
2. 정기 세미나 및 토론회
3. 공동저서, 학술지 및 웹진 발간
4. 타 연구소 및 학회와의 교류 및 공동연구
5.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공개강연회 개최
6. 기타 센터의 발전 및 목적에 부합하는 기타 사업

제5조(구성원) 본 센터는 연구센터장, 부센터장, 연구위원, 전임교원, 연구원 등으로 구성된다.

제6조(연구센터장) ① 연구센터장(이하 “센터장”이라 한다)은 현직 센터장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처장이 임명한다. 단, 설립 후 센터장을 최초 임명할 경우 연구처장이 센터 설립제안자 등과 협의하여 센터장을 임명한다.

-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센터 업무를 총괄한다.
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이며, 연임할 수 있다.
④ 센터가 국공립기관 등의 연구소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기관의 사업 조건에 따라 센터장의 임기가 보장될 필요가 있는 경우,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 지원 기간 동안 센터장의 임기를 보장할 수 있다.

제7조(부센터장) ① 센터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연구처장의 협의를 거쳐 센터장이 임명한다.

- ② 부센터장은 평소 센터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센터장의 궐위나 유고 그리고 외유 등 기타 사정으로 센터장이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울 때 센터장의 업무 및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.
③ 센터장의 권한을 대행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의 동의와 연구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④ 부센터장의 임기는 현 센터장의 임기를 따르도록 한다.

제8조(연구위원) 연구위원은 본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본교 대학교수 및 그에 준하는 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센터장이 위촉한다.

제9조(전임교원) ① 본 센터 소속 전임교원은 경희대학교 교원인사 기본규정에 동일하게 적용되며, 소속 전임교원의 재임용 및 승진과 관련된 제반 사항 또한 본교 교원 재임용 및 승진기준에 따른다.

- ② 본 센터 소속 전임교원은 당연직으로 본 센터의 책임연구원이 된다.

제10조(연구원) ① 연구원은 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, 선임연구원은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, 책임연구원은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며, 센터장이 임명한다.

- ② 센터 운영에 필요한 행정 및 기술 요원, 객원 연구위원, 특별연구원 및 연수생 등을 둘 수 있으며 그 직위와 역할은 센

터장이 정하고 임명한다.

제11조(운영위원회) 본 센터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
① 운영위원회는 센터장이 위촉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, 센터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.

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센터의 조직
2. 운영체계 및 기본 연구계획에 관한 사항
3. 센터의 연구 방향 조정
4. 예산 및 결산
5. 센터의 제 규정의 개폐
6. 기타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센터규정의 제정에 관한 건은 출석위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다만, 과반수 이상의 운영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.

제12조(재정) 본 센터의 재정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.

1. 교내연구비
2. 대외연구비
3. 기타 수입

제13조(연구비 집행) ① 교내연구비의 집행은 본교 규정에 따른다.

② 대외연구비의 집행은 주관 기관의 집행 가이드 라인을 기준으로 한다.

제14조(보칙)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본교 규정을 준용한다.

부칙

본 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